

의안번호	제 128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3월 일 (제298회)
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 
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정 현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1년 2월 일

# 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 현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1년 2월 일

발 의 자 : 정 현 · 김봉희 · 김종필 · 김희수 ·  
박문희 · 윤성옥 · 황규철 의원( 7명)

의안 번호	128
----------	-----

## 1. 제안 이유

- 우리도의 농어업·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(안 제18조, 안 제21조~안 제24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예산조치 : 3,324억원(국비 2,547억원 , 도비 777억원)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 
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중 “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장 제목 중 “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”로 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) 도지사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·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제21조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

### 3. 수산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

제21조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한다.

제22조 제목 중 “위원회의 구성”을 “심의회의 구성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심의회”로 하고, “20명”을 “25명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부위원장 1명은 행정부지사가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”를 “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”로 한다.

제22조제3항 중 “임명 또는 위촉한다.”를 “위촉한다.”로 한다.

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

제22조제3항제2호 중 “9명”을 “11명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·연구소·국제기구에서 부교수·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

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·행정기관·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 
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

제22조제4항 중 “당연직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”를 “제3항에 따른 위원  
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  
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22조제5항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심의회”로 한다.

제22조제6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심의회”로 한다.

제23조 제목 중 “위원회의 운영”을 “심의회 운영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심의회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본문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심의회”로 한  
다.

제24조 중 “위원회”를 “심의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지원사업 결정 ) 농어업인 또는 시장·군수가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도지사가 한다. 다만,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.</p>	<p>제18조(지원사업 결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 -----.</p>
<p>제4장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</p>	<p>제4장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</p>
<p>제21조(위원회의 설치 ) 도지사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	<p>제21조(심의회 설치 및 기능) 도지사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·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<u>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</u></p> <p>2. <u>농어업의 경쟁력 강화</u></p> <p>3. <u>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</u></p> <p>4. <u>도농 및 시군의 균형발전과 교류촉진</u></p> <p>5. <u>식품산업의 육성</u></p> <p>제2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<u>2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 1명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1. <u>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</u></p> <p>3. <u>수산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(삭제)</p> <p>5. (삭제)</p> <p>제22조(심의회회의 구성) ① 심의회----- ----- <b>25명</b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,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다른 1명은 제 3항 제2호 및 제 3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<u>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p>1. <u>농정국장, 농업기술원장 등 2명 이내</u></p> <p>2. <u>생산자단체,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등 9명 이내</u></p> <p>3. <u>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·연구소 국제기구에서 부교수·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할 사람 및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·행정기관 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사람 7명 이내</u></p>	<p>③ ----- ----- <u>위촉한다.</u></p> <p>1. <u>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</u>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11명</u> -----</p> <p>3. <u>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·연구소 국제기구에서 부교수·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·행정기관·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</u>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④ 당연직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</p>	<p>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제 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----- -----.</p>
<p>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⑤ ----- 심의회----- -----심의회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</p>
<p>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.</p>	<p>⑥ 심의회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3조(위원회의 운영) ① 농업의 경쟁력 제고, 농촌의 개발과 식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</p>	<p>제23조(심의회회의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심의회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<u>위원회</u>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② <u>심의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③ <u>위원회</u>의 중요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인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<u>위원회</u>의 의결을 거쳐 제척 또는 회피 시킬 수 있다.</p>	<p>③ <u>심의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심의회</u>----- -----.</p>
<p>④ 위원장은 <u>위원회</u>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<u>위원회</u>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④ ----- <u>심의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심의회</u>----- -----.</p>
<p>⑤ 위원장은 <u>위원회</u>의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	<p>⑤ ----- <u>심의회</u>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실비보상 등)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23조(실비보상 등) ① 심의회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# 관 계 법 령

## 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15조(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) ①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, 시·군 및 자치구에 시·군·구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, 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, 그 밖에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17조에 따른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
3.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

제14조(시·도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성 등)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·도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,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·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
2. 생산자단체, 농어업인단체,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
3.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·연구소·국제기구에서 부교수·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·행정기관·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
-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⑤ 시·도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